

#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 시 정 요 구

제 목 조경설계 부적정

기 관 명 광주광역시

내 용

광주광역시 ○○○○○○에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사비의 50%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아 2012. 8. 20. 경기도 ○○시 ○○구 ○○로 000번길 00-00에 있는 ○○○○(주)(대표자 ○○○)의 1개사<sup>1)</sup>와 ‘○○○○도로 개설공사(2공구)’를 총 공사부기금액 36,373,649,000원<sup>2)</sup>으로 도급계약하고 같은 해 8. 24. 착공하여 2017. 12. 24. 준공예정으로 시행 중에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공사설계의 변경)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설계변경 할 수 있으며,

같은 기준 제6절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특정 공종의 삭제,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 경기도 ○○시 ○○로 000, ○○○○○○○○ 000호(○○동)에 있는 (주)○○건설 (대표자 ○○○)  
2) 2017. 5. 22. 총공사부기금액이 36,990,026,000원으로 변경되었음

또한 「광주광역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가로수는 절토비탈면은 식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녹화, 차폐 등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절토비탈면에도 가로수를 식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관서에서는 위 공사의 설계서에 공사로 인해 발생된 절토비탈면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복원하고, 도로 이용자들에게 안정감과 쾌적함을 제공하기 위하여 생태복원녹화를 반영하였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위 공사의 절토비탈면은 생태복원녹화가 이미 반영되어 있고, 차폐 등 특별한 목적이 없으므로 가로수 식재를 반영할 필요가 없는 데도, 아래 [표]와 같이 스트로브 잣나무 등 14종 6,825주의 가로수를 생태복원 녹화가 반영된 절토비탈면에 식재하도록 반영하고 있어 조경 공사비 144,239,000 원 상당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표] “절토비탈면에 반영되어 있는 가로수 현황”

〈단위 : 원〉

공종	규격	단위	수 량	공사비	비고
○ 합 계			6,825	144,239,000	
- 스트로브 잣나무	H50xW2.5xR20	주	20	2,536,000	
- 아왜나무	H3.0xW1.5	주	67	13,977,000	
- 느티나무	H4.0xR12	주	39	13,821,000	
- 복자기	H3.0xR8	주	30	5,974,000	
- 산벚나무	H3.5xR8	주	24	4,301,000	
- 살구나무	H3.0xR8	주	20	3,213,000	
- 이팝나무	H3.0xR10	주	80	20,493,000	
- 자귀나무	H2.5xR6	주	80	8,129,000	
- 중국단풍	H3.0xR8	주	40	4,998,000	
- 청단풍	H2.5xR8	주	25	4,306,000	
- 회양목	H0.3xW0.3	주	2,400	11,993,000	
- 산철쭉	H0.5xW0.5	주	500	2,499,000	
- 영산홍	H0.3xW0.3	주	1,500	5,193,000	
- 자산홍	H0.3xW0.3	주	2,000	6,050,000	
- 제경비		식	1	36,756,000	

※ 광주광역시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광주광역시장은

[시정] 절토비탈면에 반영되어 있는 가로수 식재를 삭제하는 것으로 설계 변경하여 공사비 144,239,000원 상당을 감액하시기 바랍니다.